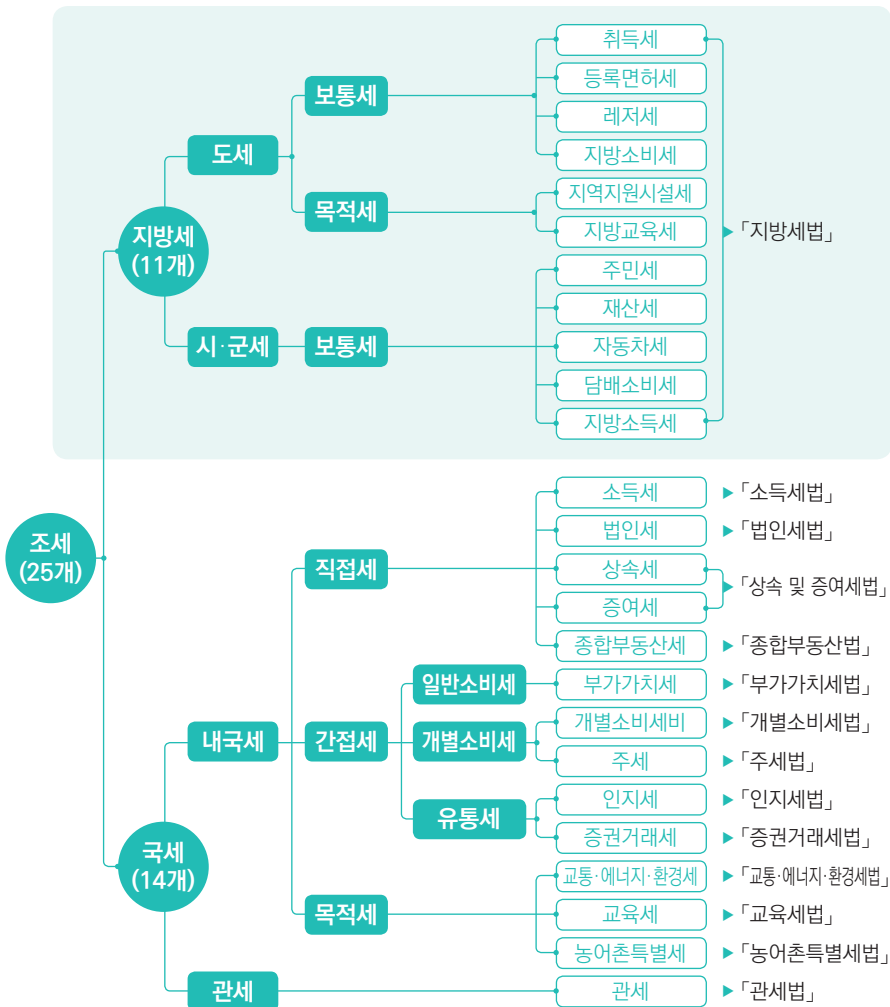


○ 개념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귀속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합니다.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광역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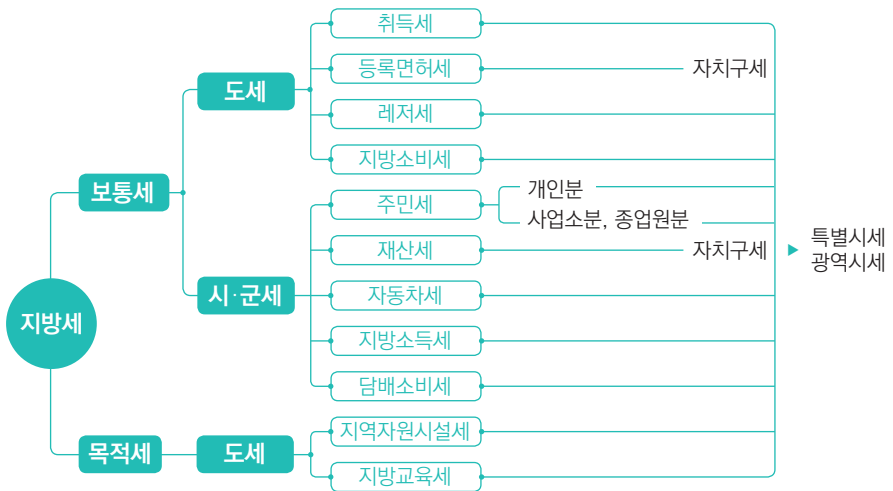
○ 광역자치단체 지방세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세

광역자치단체인 도 본청의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지방세 세목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와 담배소비세가 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자치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특별·광역시 세목입니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 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은 특별시세이며,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세의 모든 세목이 해당 도와 시의 세목입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대상과 목적

세 목	과세대상 또는 과세목적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임목,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한 자에게 부과함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부과하는 등록분과 각종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나뉨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 경기의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에게 과세함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해서 얻은 매출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과세함
담배소비세	·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부과되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은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으로 구분함
지방소비세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세원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1%
주민세	·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그리고 사업소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함
지방소득세	· 소득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함 · 2014년도부터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5종의 재산이 과세대상 ·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일괄평가하므로 별도의 과세대상임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소유분과 과거 주행세인 주행분으로 나뉘고,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 과세대상 · 승용자동차의 연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따라 다름
지역자원시설세	·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음 * 2021년부터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함